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11호 2013. 12. 23.(월)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067호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2
- 사천시 조례 제1068호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사천시 조례 제1069호 사천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 ---8
- 사천시 조례 제1070호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사천시 조례 제1071호 사천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사천시 조례 제1072호 사천시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사천시 조례 제1073호 사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24
- 사천시 조례 제1074호 사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36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3-217호 2013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고시 -----38
- 사천시 고시 제2013-218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고시 ---40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06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23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를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
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
라 자활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기금” 을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로,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를 “시” 로 하며, 같
은 조 제7호 중 “실시결과” 를 “실시 결과” 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을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로,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영” 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 로,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3)

제3조제4호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단서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의 규정에”를 “에”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본문 중 “의거”를 “따라”로, “사천시”를 “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같은 조 제11호 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과 “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6월 이상”을 각각 “6월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 중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6조의4에 따른”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4)

제11조제1항 중 “회계년도” 를 “회계연도” 로,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및” 을 “과” 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연도” 를 “해당 연도” 로 한다.

제13조 중 “매 회계연도 마다” 를 “회계연도 마다” 로 한다.

제14조 중 “규정되지 아니한” 을 “정하지 않은” 으로,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을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제4조제3항제2호와 제3호, 제11조제2항제3호 중 “기타” 를 각각 “그 밖 에” 로 한다.

제5조제3호와 제5호, 제7조, 제8조제4항제3호, 제9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각각 “에 따른”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5)

사천시 조례 제106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23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천시”를 “시”로, “지급과 이를”을 “지급을”로, “재학중인”을 “재학 중인”으로, “및”을 “과”로, “규정함을”을 “정함을”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라 함은”을 “이란”으로, “및”을 “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및”을 “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제경비”를 “제 경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을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및”을 “와”로, “재학중인”을 “재학 중인”으로, “지급하는데”를 “지급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목적 외로”를 “목적 외에는”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6)

제6조의1(기금의 존속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중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이를 대행한다.”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시의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리에 관하여는”을 “관리는”으로, “및”을 각각 “와”와 “과”로, “보관과,”를 “보관,”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를 “이외의 사항에”로, “및”을 “와”로, “「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재학중인”을 “재학 중인”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1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인원수”를 “인원 수”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경비 및”을 “제 경비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조제3호, 같은 조 제5호 중 “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3조 본문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7)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2항제1호와 제2호, 제11조제2항제1호와 제2호
중 “및” 을 각각 “과” 로 한다.

제13조제1호와 제3호, 제18조제1호 중 “재학중인” 을 각각 “재학 중인”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8)

사천시 조례 제106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23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

사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9)

사천시 조례 제107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23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를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으로 한다.

제2조 중 “제증명등”을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동일한 것”을 “같은 사항”으로, “수인”을 “여러 명”으로 하며, “동일사항”을 “같은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인”을 “여러 명”으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일인”을 “같은 사람”으로 하며, “수건”을 “여러 건”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수입증지”를 “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 포함)”로, “첨부”를 “인증 또는 첨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를 “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전자화폐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 중 “변경시”를 “변경 시”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7.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중 “제증명등” 을 각각 “제증명 등” 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11)

사천시 조례 제107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23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시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모든 공유재산”을 “시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로, “관리”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괄재산관리자”를 “재산을 총괄관리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에 따른 사천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심의회회의 기능) ① 심의회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또는 무상대부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12)

5. 법 제2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부 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6.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 나.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 제7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거” 를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관리상태” 를 “관리 및 이용현황” 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재산관리관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제2항 중 “총괄 전담부서” 를 “총괄부서” 로,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 를 “공유임야 관리부서” 로 한다.
- 제12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지” 를 각각 “따르지” 로,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13)

라” 로,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16조 중 “의 규정에 의하되” 를 “에 따르되” 로 한다.

제17조 중 “관리책임 공무원” 을 “재산관리관”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을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려는 경우” 로 하고,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익계약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제19조 중 “행정재산” 을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 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수익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제21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 를 “에 따라 관리수탁자” 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14)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를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로, “수탁자” 를 “관리수탁자” 로 한다.

제21조제5항 중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를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로, “당해” 를 “해당” 으로, “증가” 를 “증대”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내지 제4항의” 를 “부터 제4항까지의” 로 하고, “년수” 를 “연수” 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15)

4. 영 제19조제4항 해당 여부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제22조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고 “내지” 를 “부터” 로 하며, “의” 를 “까지의” 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거” 를 “에 따라” 로,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2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영 제29조제1항제7호·제38조제1항제25호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 하거나 대부료 감면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제2호 중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를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을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로 하고,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 중 “당해” 를 각각 “해당” 으로, “1,000” 을 각각 “1천” 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제27조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를 “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16)

부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제27조제5항제5호 중 “내지”를 “부터”로, “의”를 “까지의”로 하고,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시 공유임야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9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원석의 입방미터당”을 “채취물의 세제곱미터 당”으로, “1,000”을 “1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석시가라 함은”을 “채취물의 시가라”으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을 “해당 채취물의 세제곱미터 당”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토석”을 “채취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000”을 “1천”으로, “토석채취료를”을 “토석채취료의 요율을”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을 “다음의 산식을”로 하고, 이어지는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17)

$$\frac{\text{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총 공용면적}}{\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times \frac{\text{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전용면적}}{\text{해당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frac{\text{해당 부지면적}}{\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times \text{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제30조제5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제13조제8항” 을 “제13조제9항” 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 중 “1” 을 “어느 하나” 로 각각 한다.

제31조제1호가목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재정경제부장관” 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바목과 사목 중 “내지” 를 “부터”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아목 중 “규정된” 을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마목과 바목 및 같은 조 제3호 마목과 바목, 사목 중 “내지” 를 각각 “부터” 로 한다.

제3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7조제6항 및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감액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로 하며,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100분의 25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18)

3.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100분의 20

제32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1” 를 “어느 하나” 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금액 조정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일 또는 대부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단, 제1호의 경우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4조제3항 중 “의 규정에 불구하고” 를 “에도 불구하고”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지원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지원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19)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제1항, 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② 제1항, 영 제11조의3제2항 또는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8조 본문 및 제1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을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20)

” 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 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 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위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 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 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 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 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4.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 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지분의 면적이 읍·면지역에서는 1천 제곱미터 이하, 동지역에서는 5백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 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21)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동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토지

8. 시가 천재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에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9.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40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8호 중 “내지 2급”을 각각 “부터 2급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내지 3급”을 “부터 3급까지의”로 한다.

제56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57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58조제1항과 제2항 중 “의 규정에 따라”를 각각 “에 따라”로 한다.

제60조 중 “내지 제59조의”를 “부터 제59조까지의”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본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3,000”을 “3천”으로 하고, 같은 조 같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22)

은 항 제1호와 제2호 중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대하여는” 을 각각 “대한 보상금은” 으로, “재산가액” 을 각각 “재산가격” 으로, “상당액” 을 각각 “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상금은 신고 된 은닉재산이 등기 등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64조 중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으로 하며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65조 중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으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당해” 를 각각 “해당” 으로 하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로 하고,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5조, 제31조제1항제1호사목,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바목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각각 한다.

제6조, 제26조제1호, 같은 조 제4호, 제27조제5항제2호, 제47조, 제62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각각 한다.

제2조제3항, 제13조, 제32조제4항, 제44조제2항, 제54조제3호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각각 “에 따른” 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제35조제2항제10호, 제54조제4호, 제58조제2항제3호 중 “기타” 를 각각 “그 밖에” 로 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교환차금,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2항 및 제4항, 제37조제3항, 제37조의2, 제62조제1항, 제62조의2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 ③(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23)

사천시 조례 제107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23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0년” 을 “5년” 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5년” 을 “3년”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호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24)

사천시 조례 제107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23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건축법」 (이하 “법” 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를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 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4조 및 영 제5조” 를 “ 「건축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의5”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5명 이상 30명” 을 “25명 이상 40명” 으로, “영 제5조제7항 제1호라목” 을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 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 를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 같은 조 제6항, 제7항 중 “자로” 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2호 및 제3호 중 “소지자” 를 각각 “가진 사람” 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3일” 을 “7일” 로, “원칙으로 하며” 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경미한 변경은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를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25)

제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제9조제4호 중 “영 제5조제4항제5호” 를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 로 한다.

제9조제4호가목 중 “분양하는” 를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양하는” 으로 한다.

제9조제4호나목 중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건축물” 을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10층 이상 또는 50실 이상(공동주택 세대도 포함한다)” 로 한다.

제9조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100세대 이상 이거나 10층 이상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경우 2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문위원회는” 을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는” 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에 출석하여” 를 “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26)

에 출석하여” 로 한다.

제12조 중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하며, “범위 안으로” 를 “범위로” 한다. 또한 같은 조 제4항 중 “시 건축위원회” 를 “위원회” 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규칙” 을 “「건축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를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영 제15조제5항제14호” 를 “영 제15조제5항제15호” 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용도변경 중 건축사 설계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을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35조제3항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기간 도래전이라도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자격 소지자” 를 “자격증 가진 사람” 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소지자로서” 를 “가진 사람으로서” 로 한다.

제26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의 규정에 따른” 을 “에 따른”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27)

제28조를 제28조제1항으로 하며, 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제2000-159호)” 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교목 한 그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심어야 한다.

1. 수관폭 1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2미터 이상
2.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

제29조 중 “ 10제곱미터의” 를 “30제곱미터” 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심의신청서
2. 토지조서
3. 도로현황도(측량성과도 등)
4. 그 밖에, 사실상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빙자료

제34조제1항 중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지역·공업지역으로서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을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및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에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맞벽건축이 가능한” 을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이 가능한” 으로 한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28)

1. 제7호 판매시설

제3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8미터” 를 각각 “9미터” 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조항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나목 중 “0.8배” 를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로, “1배” 를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법 제60조” 를 “법 제60조제3항” 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5조 및 같은 조 제4호,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5항 중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한다.

제12조, 제16조제3호, 제26조제5항, 제30조제2항 중 “안에서” 를 각각 “에서” 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사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29)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제24조 관련>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시간
66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5시간
2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6시간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8시간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6시간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9시간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30시간
30만제곱미터 이상	38시간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위 표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1명 시간당 노임단가」에 구조계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함(천원단위 이하 절사)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용도 및 구조 계수

등급	용도 및 구조		계 수 (가중치)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철골구조 및 조립식 판넬	0.6
		그 외 구조	0.8
나	가 등급을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철골구조, 조적식 구조 및 조립식 판넬 기타 등	1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30)

2. 수수료지급 기준(사용승인 처리된 경우에 한한다)

가.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산출금액의 100퍼센트

나.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산출금액의 50퍼센트(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 승인 시 지급하며 현장조사·검사자는 최초 검사자가 하여야 한다)

다. 동별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산출금액의 50퍼센트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31)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의 창고건축물은 제외 한다.)	· 준 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 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 2미터 이상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32)

2. 인접대지경계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2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 준 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5미터 : 이상 · 연립주택 : 2.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군사 및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 4미터 이상(상업지역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 기 타 : 2미터 이상

※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33)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및 산정기준<제40조 관련>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가.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연 2회의 범위에서 부과하되 부과 회수는 5회로 한다.

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위 반 건 축 물	해 당 법 조 문	이 행 강 제 금 액
1.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2.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55조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56조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5.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6. 유지·관리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35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7.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7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8.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8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34)

위 반 건 축 물	해 당 법 조 문	이 행 강 제 금 액
9.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0.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50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51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2.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3.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5.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다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가.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연 2회 범위에서 부과되 부과 회수는 5회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35)

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위 반 건 축 물	해 당 법 조 문	이 행 강 제 금 액
1.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대지 안의 조경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4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5.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6.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35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7.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36)

사천시 조례 제107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23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촉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37)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자금출납공무원은 청소시설담당주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계약 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중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제7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전용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38)

사천시 고시 제2013-217호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고시

사천시 의회 의결(2013. 12. 20.)을 득한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2. 24.

사 천 시 장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계	474,544,200	482,140,014	-7,595,814
일 반 회 계	430,958,578	439,784,042	-8,825,464
특 별 회 계	43,585,622	42,355,972	1,229,650
상 수 도 사 업	16,161,374	16,161,374	0
하 수 도 사 업	8,947,877	8,947,877	0
주 택 사 업	441,852	441,852	0
지 하 수 관 리	240,664	240,664	0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512,973	512,973	0
의 료 급 여 기 금	1,992,235	1,931,787	60,448
기초생활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관리	979,839	979,839	0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	256,981	223,131	33,85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	354,944	354,944	0
농 공 단 지 사 업	4,438,800	3,366,819	1,071,981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2,717,410	2,717,410	4,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958,287	1,959,287	-1,000
수 질 개 선 사 업	1,818,015	1,818,015	0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760,371	1,700,000	60,371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1,000,000	1,000,000	0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39)

□ 세 입

(단위 : 천원)

장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계	474,544,200	482,140,014	-7,595,814
일 반 회 계	430,958,578	439,784,042	-8,825,464
지방세수입	48,095,000	44,433,000	3,626,000
세외수입	43,625,553	44,354,019	-728,466
지방교부세	164,873,271	164,534,271	339,0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7,410,000	18,910,000	-1,500,000
보조금	155,990,754	166,552,752	-10,561,998
지방채	1,000,000	1,000,000	0
특 별 회 계	43,585,622	42,355,972	1,229,650
세외수입	41,309,472	40,140,270	1169202
보조금	2,276,150	2,215,702	60,448
지방채	-	-	

□ 세 출

(단위 : 천원)

장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계	474,544,200	482,140,014	-7,595,814
일 반 회 계	430,958,578	439,784,042	-8,825,464
정책사업	348,252,298	357,713,667	-9,464,369
행정운영경비	64,416,681	65,780,776	-1,364,095
재무활동	18,289,599	16,289,599	2,000,000
특 별 회 계	43,585,622	42,355,972	1,229,650
정책사업	38,124,258	37,926,169	198,089
행정운영경비	1,764,005	1,765,185	-1,180
재무활동	3,697,359	2,664,618	1,032,741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40)

사천시 고시 제2013-218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고시

사천시의회 의결(2013. 12. 20.)을 득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본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 12. 24.

사 천 시 장

□ 예 산 규 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2014년도 당초예산	2013년도 당초예산	증 감
계	452,923,455	451,730,600	1,192,855
일 반 회 계	412,473,384	412,463,797	9,587
특 별 회 계	40,450,071	39,266,803	1,183,268
상 수 도 사 업	15,990,812	14,982,565	△1,563,749
하 수 도 사 업	8,045,040	8,523,416	265,91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884,900	2,258,306	△373,406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411,500	371,900	39,600
의 료 급 여 기 금	1,959,744	1,966,178	△6,434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관리	1,019,231	920,827	98,404
수 질 개 선 사 업	750,189	784,903	△34,714
농 공 단 지 사 업	3,260,805	3,080,000	180,805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2,765,000	2,711,000	54,000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	129,195	222,057	△92,86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	291,108	316,438	△25,330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209,195	1,500,000	△290,805
중 포 일 반 산 업 단 지	80,000	0	80,000
주 택 사 업	442,552	430,413	12,139
지 하 수 관 리	210,800	198,800	12,000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2,000,000	1,000,000	1,000,000

사 천 시 공 보

제311호(41)

□ 세 입

(단위 : 천원)

장 별	2014년도 당초예산	2013년도 당초예산	증 감
계	452,923,455	451,730,600	1,192,855
일 반 회 계	412,473,384	412,463,797	9,587
지방세수입	46,835,000	44,433,000	2,402,000
세외수입	13,241,650	12,849,425	392,225
지방교부세	158,928,741	162,955,132	△4,026,391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9,510,000	14,510,000	5,000,000
보조금	144,855,627	150,005,140	△5,149,513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9,102,366	26,711,100	2,391,266
지방채	0	1,000,000	△1,000,000
특 별 회 계	40,450,071	39,266,803	1,183,268
세외수입	17,460,739	18,377,850	△917,111
보조금	2,489,737	2,221,891	267,846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0,499,595	18,667,062	1,832,533

□ 세 출

(단위 : 천원)

장 별	2014년도 당초예산	2013년도 당초예산	증 감
계	452,923,455	451,730,600	1,192,855
일 반 회 계	412,473,384	412,463,797	9,587
정책사업	324,096,981	330,863,178	△6,766,197
행정운영경비	70,373,351	65,809,280	4,564,071
재무활동	18,003,052	15,791,339	2,211,713
특 별 회 계	40,450,071	39,266,803	1,183,268
정책사업	36,090,782	34,951,713	1,147,069
행정운영경비	1,791,941	1,706,290	856,516
재무활동	2,559,348	2,608,800	△49,452